

강의평가운영에 관한 지침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국제예술대학교(이하 ‘우리 대학’) 강의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평가대상) ① 강의평가는 해당 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의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
2. 강의평가 설문과 강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교과목
3. 그 밖에 교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

제3조 (평가지기) 강의평가는 매 학기 종강 후 성적열람기한 이내로 하며 필요시 중간강의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 (평가내용) 강의평가 내용은 수업목표, 수업내용, 수업방법, 수업효과, 수업만족도 등의 수업관련 설문과 수업참여 학습자의 자유기술 의견을 포함한다.

제5조 (배점기준) 각 설문 항목별 최고점수는 5점으로 하며, 아래표의 기준에 따라 설문내용을 평가한다.

평가항목	매우 그렇다	그렇다	보통이다	그렇지 않다	매우 그렇지 않다
배 점	5점	4점	3점	2점	1점

제6조 (평가방법 및 결과공개) ① 평가방법은 수강학생이 해당학기 강의평가 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실시하며, 미응답자에게는 해당학기 성적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평가 주관부서는 강의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담당교원이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 (평가결과의 활용) ① 강의평가 결과는 교원인사, 교수업적평가, 우수교원 포상, 수업의 질 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③ 강의평가 결과는 별표1의 강의평가 결과 활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한다.

제8조 (비밀유지) 강의평가 업무에 참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

는 아니 된다.

제9조 (기타)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지침은 2015년 2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지침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강의평가 결과 활용기준

구분	평가점수	1회	2회[4학기 중]	3회[6학기 중]
전임교원	70점 미만	교수역량강화연수 (10시간 이상)	교수역량강화연수 (20시간 이상)	해당교과목 강의배제
겸임교원 초빙/객원교원	70점 미만	경고	임용 배제	
시간강사	70점 미만	경고	임용 배제	